	ᅣ	보 도 자 료	1			
국토교통부	배포일시	2021. 2. 16.(화) /총 15매(본문2, 참고13)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담 당 자	• 과장 김명준, 사무관 김대영, 주 • ☎ (044) 201-3358, 3359	무관 이호성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기획과	담 당 자	• 과장 장은섭, 사무관 김미란 • ☎ (044) 202-3161				
보도일시		2월 17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신·방송·인터넷은 2. 16.(화) 11:00				

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2월 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 * 복지로(www.bokjiro.go.kr): 다양한 복지제도 정보제공과 복지서비스 온라인신청 포털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하 청년 주거급여)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 *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 : 3인가구 기준 1,792,778원
 -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례 예시>

- ♦ 청주거주 부모(2인) + 서울거주 20대 자녀(1인)로 구성된 3인 가구
 - **일반 주거급여 :** 부모+청년(청주 3인) : 월 21.7만원
 - o 청년 주거급여: 부모(청주 2인): 월 18.3만원, 자녀(서울 1인): 월 31.0만원
- 지금까지 청년 주거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가정이나 직장에서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자의
공인역	인증서로 🤈	본인인증	후 신	청하면 된	다.		

- (온라인 신청절차) (1단계) 온라인신청 접속 후 서비스 선택 → (2단계) 신청 서비스 정보 입력 및 동의 → (3단계) 청년 주택조사 신청정보 입력(관련 구비서류 등 첨부)
 → (4단계) 신청서 작성완료 및 제출하기
- 자세한 신청요건 및 방법에 대해서는 '복지로 온라인신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국토교통는 이번 온라인 신청을 계기로 보다 많은 청년들이 편리하게 주거급여 수급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지원 정책을 발굴하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붙임 1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 개요

- ① (신청대상)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로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사람
 -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이하(보장가구 내 전체 가구원수 기준)

<'21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45%>

(원/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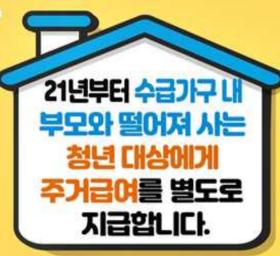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 *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 기준
- ② (분리거주 기준) 부모와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군(광역시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군을 제외)을 달리하는 경우로 하되, 보장기관이 판단 하여 예외 인정가능

<동일 시・군에 대한 분리지급 예외인정 가능 예시>

- · 도농복합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구)와 농촌(군)으로 분리거주하는 경우 ex) 부산(기장군), 대구(달성군), 울산(울주군), 인천(강화군, 옹진군)
- · 부모와 청년의 거주지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 경우
- · 청년이 별도가구 보장특례 적용에 준하는 장애·만성·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
- ③ (보장기관) 부모가 거주하는 시장・군수・구청장
- ④ (임차급여 산정방식)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적용 방식은 현행 임차급여 산정방식을 적용하되, 자기부담분과 기준 임대료 적용은 분리지급 취지에 맞게 별도 적용
 - ◈ 청주거주 부모(2인) + 서울거주 20대 자녀(1인)로 구성된 3인 가구
 - o **일반 주거급여 :** 부모+청년(청주 3인) : 월 21.7만원
 - o 청년 주거급여 : 부모(청주 2인) : 월 18.3만원, 자녀(서울 1인) : 월 31.0만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인포그래픽





주거급여콥센터: 1600-0777 마 이 홈 포 텔: www.myhome.go.kr 주거급여 자가진단하세요!

지원대상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신청, 신규 신청시 주거급여와 동시에 신청해야 함

(추가 요건) ①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필수)

②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신청인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 공무원

※ 대리신청도 가능하나 위임장 필요. 담당 공무원 직권신청은 수급권자 동의 필요

신청장소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제출서류]

- ①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선분증 지참)
- ②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③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 ※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②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④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 ① 통장사본

지원내용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하나,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 ※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역(1만원) 지급
-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 ※ 청년 주거급여는 수급가구 내 분리자급이 원칙어므로 부모가구원의 급여가 마생성 및 중지되는 경우 청년 가구의 급여도 미생성
- ※ (기본 예시) 청주 거주 부모(2명) + 성남판교 거주 청년(1명)로 구성된 3인 가구로 지급되던 주거급여가 부모(청주 2인), 청년 (성남 1인)으로 분리지급

	지원상한역(원/월)				
ファーク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양천)	3급지 (광역시/세종)	4급지 (그 의)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산정방식
101	310,000	239,000	190,000	163,000	• 부모가구 급여액
221	348,000	268,000	212,000	183,000	=부모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
321	414,000	320,000	254,000	217,000	전제가구 생개급여기준금메)×부모 가구원수 비율×30%
491	480,000	371,000	294,000	253,000	• 청년가구 급여액
591	497,000	383,000	303,000	261,000	= 청년가구 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청약-
691	588,000	453,000	359,000	309.000	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금액(×청년 가구원수 비율×30%)

지급일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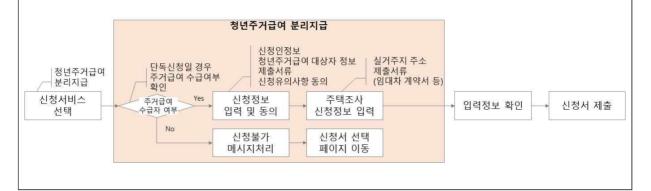
붙임 3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온라인 신청 절차

□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 서비스 선택화면에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선택 시 주거급여 수급자 여부를 확인 후 서비스신청
- * 주거급여 수급자가 아닐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불가



신청서 등록화면



(step1) 신청정보 입력 - 신청인 및 가족구성원



- 1)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보장기관은 부모가 거주하는 시군구이며, 온라인신 청서를 행복e음으로 전송 시 관리행정동은 신청인의 거주지이므로 부모가 신청
- 2) 주민등록가족정보 불러오기로 불러오지 않은 가구원은 가족추가 버튼을 클릭해서 정보를 입력
- 3) 신청인 외 가족구성원 중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일 경우 서비스 선택란이 나타남
- * [신청가능여부] 버튼 클릭 시 주거급여 수급자여부를 확인하며, 주거급여수급자 가 아닐 경우 신청서 작성이 진행이 불가 메시지 알림

신청정보 입력 - 입력정보 동의

신청정보 입력 및 동의 작성시 유의사항

- • 표시는 필수 압력사항입니다.
- * 가족사항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 1.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동거인은 제외) 으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
- 2. 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포함)
- 3,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신청인은 서비스 신청의 주체로서 진행사항과 결과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가족정보 불러오기 버튼은 주민등록 등본상에 기재된 가족정보를 불러 옵니다.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에 대한 유의사항

※ 끝까지 읽으신 후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 1.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 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한 목적으로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재산·근로능력·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기초생활보장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정보, 영유야 및 한부모 가족은 본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 정보, 노인 및 장애인은 본인 및 배우자 정보), 금융 국세 지방세, 토지 건물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 (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4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토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 조하네이라그의 회사이 보기그어를 시험하여 회사이 한국이 합니다이지를 이다 시니까지 조하였다고 시위한 이후 조하고 위한학교

동의함

동의안함

이전 화면

저장 후 다음단계

(sten2) 주택조사정보 입력 - 청년 주거급여 주택조사 및 지급계좌 입력



- 1) 청년 주거급여 주택조사정보를 입력
- 제출서류 종류 :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학원비 납입증명서, 4대보험가입자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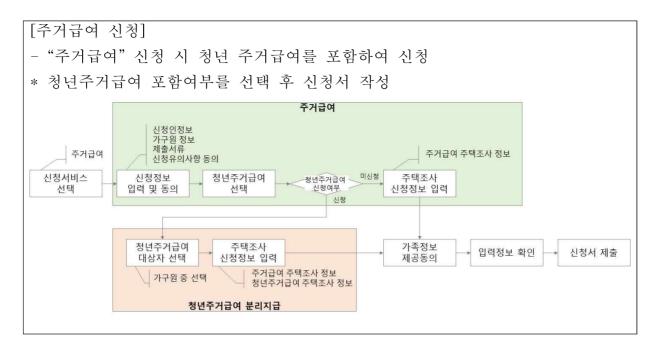
* 가족관계증명서 : 온라인신청 시 서비스대상자(청년)의 결혼여부 확인이 불가

하므로 첨부



1) 입력된 신청서 정보를 확인 후 신청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온라인신청을 행복e음으로 전송

② 신규 주거급여 신청가구



신청서 등록화면(안)



(step1) 신청정보 입력 - 신청인 및 가족구성원, 지급계좌 시청정보 입력 및 동의 주택조사 신청정보 입력 청년주택조사 신청정보 입력 가족정보 제공 용의 소독재산 신고 입력정보 확인 작성품 ▶ · 산철 내용 작성 시. 하단의 유의AP화를 반드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 단계는 가족관계를 등록하는 단계이며. Step 5 법액정보확인 화면에서 '신청사 작성원료' 비문을 누르셔야 신청이 완료됨 (표 신청서 제출 후, 신청ID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정보 + 신청인과의 관계 · 주민등백년호 발판전화 + STENISI 1016 35.01 전 1C - ---- 강인원의 선택 * - - -010 * 시군구 선택 서울특별시 ▼ 선당 강당구 · 주소 도로명하소 지반주소 ◎ 전자유편 ● 문자에세치 ◎ 전자유편+문자에세치 ◎ 문자에세지(진행성태) 및 서면(신청결과) * 신청상태 수신 항공 (동일 주민등록살 가구된 또는 따로 사는 배우자(사실혼포함) 및 30세 미만 미혼자네) 합옵 (1인가구) • 신청인의 기구별 유무 표 외국인의 경우 실명인증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방문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소입력시 주인등록등본상의 주소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 가축정보 불러오기는 신청인의 실명인증 이후 가능합니다. 설 신청인과 주소가 걸음 원 신청인과 전화가 걸음 · 신청안국의 관계 3.60 + 季思易等性度 일반전되 非可否对 \$ 03: - ****** HYPE Oti 선택 * -· 25.4 도로방주소 지변주소 • 서비스 선택 청년 주거급여 💉 전세계등 예부 ※ 한10세 이상의 가구원은 일반전화 혹은 휴대전화를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 추가된 가구원은 각각 살면인증을 실합해야 합니다. # '가족정보 둘러오기'로 호흡되지 않은 가구원은 이래 가족추가 비존을 급력하여 가구원을 추가하여 주십시오. ※ 다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가족추가 버튼을 출학하여 가구원을 반드시 추가바랍니다. 1. 가구단의 배우자(사실상 혼만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1) 주민등록가족정보 불러오기로 불러오지 않은 가구원은 가족추가버튼을 클릭해서 정보를 입력

11

가족주가

계좌번호 입력시 - 를 제외한 옷자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May #8 99

계좌번호

임시저장

*

금융기관명

2. 가구원의 30세 미만의 미혼자네

애금주명

통천역 ▼ 교보증권

급여개좌 정보

- 2) 신청인 외 가족구성원 중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일 경우 서비스 선택란이나타남
 - [신청가능여부] 버튼 클릭 시 주거급여 수급자여부를 확인하며, 주거급여수 급자가 아닐 경우 신청서 작성 불가 메시지 알림

(step2) 주택조사정보 입력 Step 2 Step 3 Step 4 Step 5 Step 6 주택조사 신청정보 입력 가족정보 제공 동의 소득재산 신고 입력정보 확인 신청정보 입력 및 동의 작설원료 🕨 작설품 ▶ 주택조사 상세정보 (실거주지) • 주택조사 주소지 도로명주소 지반주소 자가 - 자가 • 건드 자가주택(전체소유) • • 추거 유형 표 주거유형이 다음의 경우 서류를 첨부합니다. 1) 엄치-밀갈 : 암대차계약서, 주택조사기타서류, 주택조사 서밀확인서 중 하나 2) 인치-무료임차의 사용대치인은-무료임차관체 또는 무료암차분부 : 사용대치확인서 제출 서류 수백조시제출서류종류 선택 * 대상자명 墓: 11/21/27 Del Killio 중감성류 ※ 이미지 파일로 변경하신 후 업로드하십시오. + 후기 - 삭제 이전 화면 저장 후 다음단계

1) 주거급여 주택조사정보를 입력 후 [저장 후 다음단계] 버튼을 클릭하여 청년주거급여 주택조사 정보입력 화면으로 이동



- 1) 청년 주거급여 주택조사정보를 입력
- 제출서류 종류 :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학원비 납입증명서, 4대보험가입자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 온라인신청 시 서비스대상자(청년)의 결혼여부 확인이 불가

능하므로 첨부

(step4) 입력정보 확인



- 1) 청년 주거급여 주택조사 정보 입력 후 "가족관계제공동의", "소득재산신고" 등은 기존 주거급여 신청과 동일
- 2) 입력된 신청서 정보를 확인 후 신청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온라인신청을 행복e음으로 전송